

이스라엘(Israel)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및 현행법 : 1953년(국민보험), 1954년 시행; 1955년(유족연금); 1957년(노령연금); 1974년(장애연금); 1980년(소득보조); 1982년(소득보조급여); 1988년(장기요양급여)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부조제도

3 적용대상

- 이스라엘 거주민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3.85%, 60% 이하 소득의 0.22%(노령 및 유족연금);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1.86%, 60% 이하 소득의 0.11%(장애연금);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0.14%, 60% 이하 소득의 0.11%(장기요양)
 - 주요 수입원이 직장이 아닌 자에게,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불로소득의 5.76%, 60% 이하 불로소득의 2.4%(노령 및 유족급여);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불로소득의 2.07%, 60% 이하 불로소득의 0.87%(장애급여);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불로소득의 0.21%, 60% 이하 불로소득의 0.09%(장기요양)
 - 전국월평균임금은 9,906 신 셰켈(new shekel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
 - 법적 월 최저임금은 5,300 신 셰켈(new shekel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월 노령기초연금액의 5배
 - 월 노령기초연금액은 8,674 신 셰켈(new shekels)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국가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5.21%, 60% 이하 소득의 3.09%(노령 및 유족급여);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1.86%, 60% 이하 소득의 1.11%(장애급여);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0.18%, 60% 이하 소득의 0.12%(장기요양)
 - 전국월평균임금은 9,906 신 셰켈(new shekel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전국월평균임금의 25%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2.04%, 60% 이하 소득의 1.30%(노령 및 유족연금);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0.42%, 60% 이하 소득의 0.26%(장애급여); 전국월평균임금의 60% 초과 소득의 0.19%, 60% 이하 소득의 0.04%(장기요양)
- 전국월평균임금은 9,906 신 셰켈(new shekel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적 월 최저임금
- 법정 월 최저임금은 5,300 신 셰켈(new shekel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월 노령기초연금액의 5배
- 월 노령기초연금액은 8,764 신 셰켈(new shekels)
- 사회부조 : 없음

○ 정부

- 사회보험 : 가입자 소득의 0.25%(노령 및 유족연금), 가입자 소득의 0.10%(장애급여), 가입자 및 자영자 소득의 0.02%(장기요양); 특별 노령급여/유족급여/이민자를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총금액; 및 신체장애자 교통 수당의 총금액
- 정부는 또한 노령, 장애, 유족, 질병 및 출산, 근무 중 상해, 가족수당 총 보험료 납부금액의 50.94% 보조
- 사회부조 : 총금액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소득조사) : 소득조사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남성 70세, 여성 68세(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0세)임; 소득조사 진행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남성 67세, 여성 62세(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64세)임. 지난 10년 동안 가입기간이 최소 60개월 이상이거나,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144개월. 미망인; 이혼; 버림받거나; 남편이 비가입자; 미혼이며 57세 이상의 나이에 이스라엘로 이민; 퇴직연령 도달 직전 월에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여성에게는 자격 심사 기간은 없음. 60~62세(출생 날짜에 근거하여) 사이에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이민한 자들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음
- 소득조사 : 67~70세 남성, 62~68세 여성에게 연금은 총 월 소득이 특정 제한을 초과할 시 감액되거나 중지됨. 70세 남성, 68세 여성부터 소득조사 없음
- 연기연금 : 67~70세 남성, 62~68세의 여성이 소득조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한 연도 수만큼, 연금은 매년 증가
- 피부양자 보조금(소득조사) : 피부양 배우자 혹은 18세 이하(고등교육을 받고 있거나 군 입대 전 과정 수료 중에 있다면 20세, 군 복무중이거나 자원봉사 중이라면 21세) 자녀에게 지급됨.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주부는 수급자격이 없음

- 노령증액수당 : 가입기간 4년 이상. 연금을 지급받는 주부 또는 미망인은 수급자격이 없음
- 노령소득보조금(소득 및 자산조사) : 노령연금을 포함한 자산과 소득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금액 이하인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급
- 노령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 가능
- 신규 이민자를 위한 특별노령연금(사회부조, 소득 및 자산조사) : 60~62세(출생날짜에 근거하여)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이주한 후 귀국하여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67세 남성 혹은 62세 여성(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64세)
- 노령소득보조금(소득 및 자산조사) : 특별노령연금을 포함한 자산과 소득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18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장애정도가 최소 60% 이상(하나 이상의 장애) 또는 최소 40% 이상(하나의 장애가 25% 이상으로 판정 된 경우) 또는 최소 50% 이상(장애가 있는 주부)인 자. 최소 요구 가입기간은 없음. 의료위원회가 장애등급 판정
 - 근로로 자신을 부양할 수 없어야하며, 최소 50% 이상의 소득능력상실로 판정되고, 근로소득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함
 - 장애정도 75% 이상, 월 근로소득이 전국월평균임금보다 낮을 시 완전연금 지급
 - 전국가월평균임금은 9,906 뉴 셰켈(new shekels)
 - 부분장애 : 장애정도가 74% 이하로 판정된 경우 지급
 - 장려연금(소득조사): 장애연금을 최소 연속 12개월 동안 지급받았어야 하며 의료적 장애정도의 심각성과 장애연금 자격부여 시기에 근거하여 달라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추가 월 연금(AMP) : 판정된 장애 정도가 50% 이상이고(인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는 최소 40% 이상), 판정된 소득능력상실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함. 정부가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시설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
 - 등급별 추가 월 연금(AMP) : 추가 월 연금(AMP)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소득이 일반장애 연금의 제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
 - 피부양자 보조금(소득조사) : 18세 미만(학업, 자원봉사, 군 입대 준비 기간 중이라면 나이 제한이 상충함)인 첫 두 명의 피부양자 자녀 각각에게, 소득이 전국월평균임금의 57% 이하인 피부양 배우자에게 지급됨. 피부양자들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장애를 가진 주부는 그녀의 자녀를 위한 보조금을 수급 받을 자격만 있음)
 - 상시간병보조금 : 가입자가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됨. 최소 60% 이상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함(또는 최소 75% 이상의 장애 등급으로 판정되고 소득조사 대상이어야 함)
 - 특별급여 : 상시간병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함.
- 장애아급여(사회보험) : 18세 미만의 장애를 가진, 기관에서 또는 수양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체장애자 교통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부모의 자녀가 두 명이고 모두 장애를 가졌거나, 특정 조건 하에 있지 않은 이상) 아이에게 지급. 의료위원회가 장

애등급 판정

- 급여보조금 : 학용품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지급
- 신체장애자 교통 수당(사회부조) : 3~67세인 기동성상실정도가 최소 40%(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는) 또는 60%(인증된 운전사가 있으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 의료위원회가 장애등급 판정
- 장기요양급여(사회보험, 소득조사) : 67세 남성, 62세 여성(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64세), 요양시설에 살지 않고,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시 간병을 요해야 함
 - 소득조사 : 급여는 전국월평균임금 1.5배 미만의 월 소득을 가진 개인, 전국월평균임금 2.25배 미만의 월 소득을 가진 부부, 전국월평균임금 0.75배 미만의 추가 월 소득을 가진 피부양 자녀(자녀 1명당)를 가진 자에게 지급
 - 전국월평균임금은 9,906 신 셰켈(new shekels)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가입자가 전쟁 또는 적대적인 행위를 제외한 모든 요인으로 사망 시 지급됨. 가입기간은 사망 년도 전 12개월, 지난 5년 간 최소 24개월 이상, 지난 10년 간 최소 60개월 이상이거나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가입기간 요구사항을 갖춰야 함. 가입자가 이민 후 1년 이내, 또는 19세 이전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자녀의 주요부양자였거나; 주부 또는 미망인이었을 시 최소 자격기간이 없음
 -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40세 이상이거나 피부양 자녀가 있는 미망인(홀아비); 자녀증액 수당이 미망인(홀아비)에게 지급되지 않는 18세 미만의 자녀(고등교육 또는 군 입대 전 과정 수료 중인 자는 20세, 군인 또는 자원봉사자는 21세, 특정 조건 하에서는 24세까지)
 - 미망인은 사망자 사망 시, 사망자와 최소 1년 이상(55세 이상일 시 6개월 이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했거나 사망자와의 자녀가 있었어야 함
 - 홀아비는 사망자 사망 시, 사망자와 최소 1년 이상(55세 이상일 시 6개월 이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했으며 사망자와의 자녀가 있었거나 소득조사를 통과하여야 함
 -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은 재혼 시 중지됨
- 자녀증액수당 : 피부양 자녀가 있는 미망인(홀아비)에게 지급
- 노령증액수당 : 사망자가 최소 8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졌을 시 지급
- 재혼수당 : 미망인(홀아비)에게 재혼 시 지급
- 유대교 성인식(Bar Mitzvah) 수당 : 13세 남아 또는 12세 여아 고아에게 지급
- 배우자와 고아 소득 보조금(소득 및 자산조사) : 유족연금의 수급자에게 유족연금과 다른 급여를 포함한 자산과 소득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
 - 유족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이 가능함
- 특별유족연금(사회부조, 소득 및 자산조사) : 이스라엘에 거주했지만 이민 당시에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나이 제한에 부합하지 않았던 자의 미망인과 자녀에게 지급
- 배우자수당(사회보험) : 40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가 없는 미망인(홀아비) 또는 더 이상 유족연금 수급조건이 없는 미망인에게 지급
- 장제비 : 이스라엘 거주민 사망 시 장례식 주최 책임이 있는 기관에게 지급
- 사망수당(사회보험) : 미망인(홀아비) 또는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소득 지원 급여 수혜자에게 지급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소득조사) : 월 노령기초연금액의 17.7% 지급됨. 80세 이상인 수급자에게는 1% 추가 급여 지급
 - 월 노령기초연금액은 8,764 신 셰켈(new shekels)
 - 소득조사 : 가입자가 퇴직연령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소득조사 없이 연금은 전국월평균 임금의 57%(개인) 또는 76%(피부양자, 피부양자 수에 따라) 를 초과하는 월 소득 1 신 셰켈(new shekels)마다 0.60 신 셰켈(new shekels)씩 연금 감액
 - 전국월평균임금은 9,906 신 셰켈(new shekels)
 - 연기연금 : 퇴직 연기 1년당 5%씩 증액
 - 피부양자 보조금(소득조사) : 월 노령기초연금의 8.9%가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에게, 첫 두 명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5.6%가 각각 지급
 - 노령증액수당 :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4년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1년당 2%씩 증액
 - 노령소득보조금(소득 및 자산조사) : 혼인여부와 피부양 자녀의 수에 근거하여 전국월 평균임금의 36.77~74.26%가 70세 미만인 가입자에게; 37.13~74.83%가 70~79세인 가입자에게; 37.49~75.40%가 80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됨. 모든 연령그룹에게 결과 값의 7%씩 증액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조정
-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노령연금(사회보험, 소득 및 자산조사) : 사회보험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 노령소득보조금(사회부조, 소득 및 자산조사) : 혼인여부와 피부양 자녀의 수에 근거하여 월 노령기초연금의 36.77~74.26%가 70세 미만인 가입자에게; 37.13~74.83%가 70~79세인 가입자에게; 37.49~75.40%가 8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지급됨. 모든 연령 그룹에게 추가적으로 7%씩 증액
 - 월 노령기초연금은 8,674 신 셰켈(new shekels)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에 조정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월 장애기본연금의 25% + 결과 값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월 장애기본연금액은 8,783 신 셰켈(new shekles)
 - 부분장애연금 : 전체장애연금의 일정 %가 판단된 장애 정도에 근거하여 지급
 - 장려연금 : 최소 75% 이상의 장애정도를 가진 자에게 최대 장애연금의 전체 금액까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지급됨; 74%까지로 판정된 장애정도의 사람에게는 연금은 가입자의 소득능력 또는 법령 상 기준에 따라(둘 중에서 작은 값) 지급
 - 추가 월 연금(AMP) : 장애연금의 20.6%가 최소 80% 이상의 판정된 장애정도를 가진 자에게; 16%가 70~79%의 판정된 장애 정도를 가진 자에게; 11.5%가 50~69%의 판정된 장애정도를

가진 자에게 지급

- 단계별 월 연금(AMP) : 추가 월 연금액 전액이 첫 해에 지급되며, 두 번째 년도에는 75%, 세 번째 년도에는 50%, 네 번째 년도에는 25%, 다섯 번째 년도에는 0% 지급
- 피부양자 보조금(소득조사) : 월 장애기본연금의 최대 12.5%까지가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에게; 첫 두 명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각 10%이 지급됨. 두 경우 모두 결과 값의 추가 7%가 지급
- 상시간병보조금 : 전체 장애연금의 50%, 111.9%, 또는 188%가 판단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 특별급여 : 전체 장애연금의 14%, 28.5%, 또는 42.5%가 판단된 의존도에 따라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조정
- 장애아급여(사회보험) : 판단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체 장애연금의 50~188%가 지급. 장애로 판정된 아이 추가 한명 당 급여의 50% 지급
 - 급여보조 : 장애학생의 학교 등록금 및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추가 급여 지급
 - 총 장애아급여의 최댓값은 전체장애연금의 140%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에 조정
- 신체장애자 교통 수당(사회부조) : 월 급여는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지,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차를 소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추가적인 현금 급여는 자동차세와 기동성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될 수 있음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조정
- 장기요양급여(사회보험, 소득조사) : 월 1,955 신 셰켈(new shekels)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일상적인 수준에서 의존적인 수혜자에게; 월 3,208 신 셰켈(new shekels)이 심각하게 의존적인 수혜자에게; 월 3,610신 셰켈(new shekels)가 완전하게 의존적인 수혜자에게 지급됨. 급여는 보통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직접 지급됨.(장기요양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수혜자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보살핌을 받는다면, 급여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 이스라엘 국적의 전임 보호자를 고용한다면, 급여는 심각하게 의존적이라면 3,810 신 셰켈(new shekels); 완전히 의존적이라면 4,412 신 셰켈(new shekels)
 - 소득조사 : 가입자의 월 소득이 1인 기준 전국월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급여 50% 감액; 부부인 경우 부부 기준 전국월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급여 50% 감액, 상한선을 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자녀 한명마다 전국월평균임금의 0.5배 추가 지급
 - 전국월평균임금은 9,906 신 셰켈(new shekels)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조정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배우자연금 : 월 노령기초연금의 17.7%가 50세 이상이거나 자녀가 있는 미망인(홀아비)에게 지급됨; 13.3%가 40~49세의 무자녀 미망인(홀아비)에게 지급
 - 월 노령기초연금액은 8,674 신 셰켈(new shekels)
 - 자녀증액 : 월 노령기초연금의 8.3%이 각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마다 지급
 - 노령증액 : 8년을 초과하는 사망자의 가입기간 1년당 50%를 상한으로 2%씩 증액
 - 미망인(홀아비)가 노령연금도 받는다면, 배우자 연금 50% 감액

- 재혼수당 : 배우자 연금의 36개월분이 두 차례에 걸쳐 반씩 지급됨(1차는 재혼 시, 2차는 재혼 2년 후)
- 배우자 소득 보조금(소득 및 자산조사) : <월 노령기초연금의 30.3~63.4% - 140 신 셰켈(new shekels)>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망인(홀아비)에게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지급됨. 결과 값의 7% 추가 지급
- 고아연금 : 월 노령기초연금의 11%가 수급자격이 있으며 배우자연금 자녀 증액금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1명의 자녀에게 지급됨;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각 자녀에게 8.3%; 각각의 완전한 고아에게는 11%씩 지급
- 월 노령기초연금액은 8,674 신 셰켈(new shekels)
- 유대교 성인식(Bar Mitzvah) 수당 : 5,855 신 셰켈(new shekels)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 고아 소득 보조금(소득 및 자산조사) : <월 노령기초연금액의 25% - 140 신 셰켈(new shekels)>에 해당하는 금액이 완전한 고아 또는 버림받은 자녀에게 지급됨; <37.5% - 280 신 셰켈(new shekels)>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 명의 완전한 고아 또는 버림받은 자녀에게 지급됨. 월 노령기초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증액금이 추가적인 각각의 완전한 고아 또는 버림받은 자녀마다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조정
- 특별유족급여(사회부조, 소득 및 자산조사) : 급여는 사회보험 배우자연금 및 고아연금과 동일함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 조정
- 배우자 수당(사회보험) : 배우자연금의 36개월분이 일시금 형태로 4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미망인(홀아비)에게 지급
- 장제비 : 장례비가 최대치까지 장례식 책임자에게 지급
- 사망수당(사회보험) : 월 장애기본연금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
 - 월 장애기본연금은 8,783 신 셰켈(new shekels)
 - 급여조정 : 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에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 <https://www.molsa.gov.il/>
 - 전반적 감독
- 국가보험청(National Insurance Institute)
 - <https://www.btl.gov.il/>
 - 지사를 통한 제도 운영, 보험료 징수, 지사를 통해 급여지급

<2018년 ISSA 자료>